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7차)

2020. 6. 2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h·well

국민건강보험



I 목적 및 기본원칙

□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안내

□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으로 **적용 종료에 대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함.**

연번	특례별 구분	7차 주요 내용	적용월				
1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확진자)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 · (격리자)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 해외입국자는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6차 지침의 해외 여행력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 기준은 삭제 · (예방적 격리) 최대 7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 (6차) 최대 10일 → (7차) 최대 7일, '예방적 격리운영계획서' 작성 보관	7월~				
2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 (업무배제자) 최대 15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7월~				
3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중단 지침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최대 0.2점 인정 - 외부인의 잦은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월 8회까지만 인정 - 외부강사 대상 건강 모니터링 후 출입 및 개인위생 전제	7월~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 방문상담(1회)을 원칙으로 하되, -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격리 시 우선 상담(월 2회) 대체 - 수급자(보호자) 거부 시 우선상담(주 1회) 대체만 인정함.	7월~				
5	주야간보호 '한시적 코로나 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기준	· 휴원 이행기관 <table><tr><td>구분</td><td>'20.2. 29.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 내 '20.2. 기준의 월 평균 현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30% 이하</td></tr><tr><td>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td><td>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td></tr></table> ※ (6차) 정원 대비 → (7차) '20.2.29.기준의 정원 범위 내 '20.2. 기준의 월 평균 현원 대비	구분	'20.2. 29.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 내 '20.2. 기준의 월 평균 현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30% 이하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	7월~
구분	'20.2. 29.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 내 '20.2. 기준의 월 평균 현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30% 이하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						
6	시설급여기관급여비용산정기준	· 감염 수급자 외박 시 1회 최대 15일 외박비용(50%) 인정	7월~				
7	특별재난지역 등(대구·경북) 특별 지침	· 특별관리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퇴사 시 감산 미적용	종료				
8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 인력 배치 의무 특례	· 프로그램관리자 미배치 시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해당일 급여비용 10% 감액	7월~				

※ 기존 3 ~ 5차 지침 중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특례, 5등급 한시적 일반 방문요양 인정 특례, 월 한도액 추가산정기준 특례,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특례는 2020.5.부터 종료됨.

Ⅱ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1.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

○ (확진자)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 (자가격리자)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예외코드)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치료·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반드시 5년간 보관

- 기존 6차 지침 상의 해외여행력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은 폐지되며 동 기준으로 적용. ... (사유 : 입국 시점부터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등이 예방적(코호트)격리 또는 시설장의 판단(주야간보호 휴원 등) 하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배제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시간 일부 인정

- (인정대상) ▲예방적(코호트) 격리(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조치) ▲ 적극적 업무배제(종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증상 모니터링 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 일정기간 업무배제가 필요한 경우)

- (인정기준) ‘예방적 격리’ 또는 일부 종사자의 ‘적극적 업무배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사전에 반드시 붙임 1. 서식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 ·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대상 종사자, 해당 직종, 실시기간, 필요사유(상황), 관련 증빙내용, 대체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포함.

○ 1일 8시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예방적 격리’ 코드)**

※ 예방적 격리 사유(적극적 업무배제 사유 포함)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2.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

○ (업무배제자)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코호트 격리’ 코드)**

* 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반드시 5년간 보관**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 코호트 격리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야간직원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3.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

-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외부인의 출입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은 제한적 인정
 - (가산기준)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0.2점 인정
 - ※ 월 16회를 제공하더라도 최대 0.2점만 인정됨
 - (준수사항) ① 외부강사 대상으로 감염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여 붙임 2. 서식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을 별도로 작성·보관 ② 모니터링 결과 위험요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출입 금지 ③ 외부강사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포함한 손위생 실시 후 활동
 -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서식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5판)
 - (유의사항) 시설장의 판단 하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산은 인정하나,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외부인 접촉활동 자제를 당부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4.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 면역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권고 연장에 따라 실제 휴원 이행 시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인정 확대 운영
- 휴원 권고에 따라 2020. 7. 1. 이후 별도 종료 공지 기간 동안 (평일 기준)
 - ①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③ 휴원 요건 충족(2020년 2월 29일 지자체 신고 기준 정원 범위 내

2020년 2월의 월평균 현원* 대비 해당일 긴급돌봄이용자 비율이 3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에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 비용’ 청구 가능

* 월 평균 현원은 고시 제47조(입소자)에 따라 산출한 월별 이용자 수를 뜻함.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 (대상기관) 2020년 2월 29일 지자체 신고 기준 정원 범위 내 2020년 2월의 월평균 현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30% 이하(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경우만 지원

* 월 평균 현원은 고시 제47조(입소자)에 따라 산출한 월별 이용자 수를 뜻함.

- (보상비용) ① 긴급돌봄 이용자 → 급여비용 100% 지급
- ② 긴급돌봄 미이용자 → 2020년 2월 29일 지자체 신고 기준 정원 범위 내 2020년 2월의 월평균 현원 대비 해당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3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에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지급

<주야간보호기관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

1. 장기요양기관은 휴원권고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문자, 유선 등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 : 장기요양기관이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2.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비율 준수

3.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 1명 등 총 3명)을 배치하여야 함(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 만 산정 시에도 동일함.

□ 휴원 권고 이행기관의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기준

◆ (기본원칙) 2020년 7.1. 이후 별도 종료 공지 시까지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2020년 2월 29일 지자체 신고 기준 정원 범위 내 2020년 2월의 월 평균 현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30% 이하(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에 대해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이하 '코로나 특례비용')'을 추가 산정... 산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휴원 시에도 기존 고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관이 선택하여 청구 가능

◆ (주요원칙)

① (대상) 전월 말일까지 해당 월 급여계약이 적기 통보된 수급자이면서, 2020.2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일자만 적용함.

② (인정일수)

적용기간	'코로나 특례비용' 인정 일수
(공통사항) 적용 수급자가	2020년 2월 중 최소 1일 실제 이용 요건을 충족 시 산정함.
7.1.~ 별도 종료 통보시까지	2020년 2월 29일 지자체 신고 기준 정원 범위 내 2020년 2월 월평균 현원* 대비 긴급돌봄이용자가 30% 이하(소수점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일자에 한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인정(평일 기준)

③ (인정비용) 전월 말일 기준 공단에 해당 수급자의 급여일정이 적기 통보된 일자(월~금요일(근로자의 날 포함), 공휴일 제외)에 미이용 시 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사망일, 해외출국일 적용불가) 지급

* 일자별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에 따른 인정비용 세부기준

구분	'20.2. 29.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 내 '20.2. 의 월 평균 현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30% 이하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본인부담금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

※ 반드시 전월 말 기준 적기통보 내역(일정등록 포함)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하며, 당월 수정(추가) 통보 건은 산정 불가

※ 고시 제31조의'라-3'의 60%(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의 60%)를 최대 한도로 함.

- ④ (유의사항) 휴원기간 중 '20. 2. 29.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 내 '20. 2. 의 월 평균 현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30%를 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특레비용' 산정 불가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5일은 고시 기준 충족 시에 산정 가능

* 월 평균 현원은 고시 제47조(입소자)에 따라 산출한 월별 이용자 수를 뜻함.

◆ (산정기준)

- ① 공단에 전월 말 기준 해당 월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적용불가
- ② 2020.2.1.~2. 29.까지 월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
- 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및 월 중 1일 이용요건을 충족 시 지급하나, 해당 특레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
- ④ 해당 월에 긴급돌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 또는 해당 기간에 '20년 2월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내 '20년 2월 월 평균 현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의 비율이 30%를 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특레비용' 일체 산정불가
- ⑤ 필수 인력배치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6p)을 준수하여야 함.
- ⑥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해당 월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과 '미이용일 산정비용(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코로나 특레비용')의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 월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 예외적용) ... 2020.3월 ~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

- ① '코호트 격리' 또는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는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과 병설 운영
- ② '코호트 격리' 또는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는 입소형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만 해당되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병설 운영
- ③ '코호트 격리' 시행 중인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에서 운영
- ④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의 소속 종사자 또는 이용자 중 확진자(밀접 접촉자)가 발생하여 지자체(보건소 등)으로부터 폐쇄,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 ①,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 긴급돌봄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특레비용 산정을 위한 필수 인력은 배치

하고(④의 경우는 종사자 미배치도 인정함), ▲ 병설 운영시설과 물리적 장소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휴원 안내만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코로나 특례비용’을 인정함. (병설기관의 ‘코호트 격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필수 보관)

- (본인부담금)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수납
 - (월한도액) 미포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포함됨.
 - (중복급여 사용)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 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 비용 산정 불가 …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코로나 특례비용’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긴급돌봄 받는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 제외함.
-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

- ①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 일자의 ‘입소자 수’에서 제외
 - ② ‘코로나 특례비용’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정 시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
 - ③ 해당 일에 부득이하게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급여제공일수’에서 제외(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
- ※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
- ④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또는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만을 청구하는 날은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하되,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한시적 지원금) ‘코로나 특례비용’은 고시 제75조의2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산정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준수사항) ‘코로나 특례비용’은 주야간보호기관의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을 이행 시 지급하므로 ① 공단의 긴급돌봄 이용현황 등록 전산시스템 입력 ②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보관 필요
- (청구기간) ‘코로나 특례비용’은 **급여제공월 기준 익월 20일 이후부터 청구 가능하며,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

- (청구종료일)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청구불가 ...**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

- (행정사항)
 -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최대 월 5일) 대상자만 우선 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대상자만 (청구전산화면)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관리 (주야간보호) /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에 등록

☐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종사자 미배치)한 경우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

-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시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 [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월 1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 상담불가 사유별 대체 인정하는 유선상담 횟수 기준을 충족 시 인정

* 수급자(동거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자가격리 필요 상황 포함) 및 수급자 상담 거부 상황만 해당됨.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상담 불가 사유별 대체 인정 유선상담 횟수' >

◆ 수급자(동거가족) 또는 사회복지사(동거가족)의 확진(자가격리) 시

⇒ 방문상담(월 1회)을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인정

* 급여제공 중(급여제공시간)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고, 유선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월 2회)

◆ 수급자(보호자) 상담 거부 시

⇒ 방문상담(월 1회)을 유선상담(주 1회)으로 대체 인정

* 급여제공 중(급여제공시간) 주 1회(월~일요일 기준)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여야 인정함. ...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주 1회)

※ 방문상담 거부 시에는 대체인정하는 주 1회 유선상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이 월 초에 수급자 전원에 대해 방문상담 일정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방문상담 거부자에 대한 파악 필요.

-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14일간 업무배제되어 시설장(사회복지사)이 급여제공시간 중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확진통보서, 자가격리 통보서,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필요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완전 중단)된 경우,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 ◆ 월 중 급여가 일시중단 된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유선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록, 보관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 걱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월 2회)로 인정

6.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격리)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

- (격리기간 10일 이내)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
- (격리기간 10일 초과)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

- 격리기간의 일수에 따라 외박비용을 산정하되, 최대 15일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

- 시설(단기보호 포함)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7.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인력 배치 의무 특례

□ 주야간보호기관이 프로그램관리자를 미배치하여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산정기준) 한시적으로 급여비용을 인정하되, 고시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요건을 미이행한 점을 반영하여 해당 수급자의 고시 제31조제1항표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의 10% 감액 적용 ... 본인부담금도 동일하게 10% 감액하여야 함.

- (적용월) 2020. 7. ~ (급여제공월 기준) ... 적용 종료시기 별도 공지

◆ 기존 고시 제32조제10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급여비용을 전액 인정하며, 그 외 경우는 동 특례에 따라 모두 급여비용 전액의 10%를 감액함.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① 연차 유급휴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② 해당 일에 수급자가 갑자기 병원 진료 등 수급자의 예기치 못한 급여종료사정으로 인해 제공하지 못한 경우
- ③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근무일정 상 정상적 유급휴무일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붙임 1
종사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7차)[별지 서식]

				확인	작성자	시설장	
종사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 2020년 ()월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종사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종	사용 일자	총 사용일수/시간	유급 여부	증빙 서류
1				~			
		필요사유					
2				~			
		필요사유					
3				~			
		필요사유					
4				~			
		필요사유					
기타 참고사항 기재 :							
년 월 일							
첨부서류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종사자에게 예방적 격리 또는 적극적 업무배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적용일로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대체 인력운영 계획서(변경 전·후 출근표로 대체 가능) 1부 2. 관련 증빙서류(동거가족 관련 사유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적극적 업무배제 또는 예방적 격리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illegible]

1) 발열 카메라 사용하여 인지 시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직접 체온계로 측정(측정하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며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3) 감염 위험요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출입 금지